

TaxFlash

June 2026 / No. 10

Page 1

A new era of the final tax regime for small-scale taxpayers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최종분리과세 제도의 새로운 전환기

2026년 4월 22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을 규정한 정부령 GR-55²를 개정하는 정부령 GR-20¹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특정 총매출액을 보유한 납세자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분리과세 제도와는 별도로, 본 규정은 부패 및/또는 뇌물 관련 범죄와 연관된 뇌물, 사례금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지출(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함)은 소득세 목적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해설에서는 이러한 개정이 국제적 반부패 프레임워크 및 원칙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분리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령 GR-20호는 하나의 과세연도 동안 총매출액이 IDR 4.8 billion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내국 납세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0.5%의 최종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분리과세 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적격 납세자의 범위 축소

적격 납세자는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개인 납세자
-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 납세자

상기 납세자는 연간 총매출액이 IDR 4.8 billion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유한합자회사(Commanditaire Vennootschap/CV), 합명회사(firma), 마을소유기업(Badan Usaha Milik Desa Bersama/BUMDes Bersama), 그리고 일반 유한책임회사(1인 주주 회사인 *Perseroan Perorangan*을 제외)는 더 이상 0.5% 최종분리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간

개인 납세자 및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는 0.5%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기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설립 등록일로부터 최대 4년 동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제외 소득

총선 정부령 GR-55에서는 이미 독립적 인적 용역 소득, 해외에서 과세된 외국원천소득, 기타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 및 비과세 소득은 본 규정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 인적 용역의 유형 역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령 GR-20는 독립적 인적 용역으로 간주되는 직업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전문직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 블로거, 브이로거 등 다양한 창작 및 디지털 직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납세자

최종분리과세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납세자는 기존 규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과세제도를 선택한 납세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납세자, 고정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령 GR-20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 역시 추가적으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전문성을 보유하고 독립적 인적 용역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설립한 1인 주주 회사
- 개인 납세자와 해당 개인이 지배하는 1인 주주 회사의 합산 총매출액이 해당 과세연도 기준 IDR 4.8 b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 설립 후 4년의 적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협동조합

상기 b) 및 c)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후 과세연도부터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총매출 기준 금액 분할 방식을 위한 합산 규정 도입

정부령 GR-20는 IDR 4.8 billion의 총매출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총매출액은 다음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소득 및 독립적 인적 용역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전부 (최종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 포함)
- 사업 및 독립적 인적 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한 대가(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기준)로서, 판매 할인, 현금 할인 또는 유사한 차감 항목을 공제하기 전 금액.

자산 및 소득을 분리하여 보유한 부부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매출액은 부부의 합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설립한 1인 주주 회사의 매출액 역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과 규정

정부령 GR-55에 따라 제정된 모든 시행 규정은 본 정부령과 상충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본 정부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적용 기간 관련 규정

- a.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2024 과세연도에 종료된 개인 납세자는, 본 정부령에 따라 2025 및 2026 과세연도에도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b.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2025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개인 납세자 및 1인 주주 회사는, 본 정부령에 따라 2026 과세연도에도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 본 정부령 시행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2024 과세연도부터 2029 과세연도 사이에 종료되는 경우, 2025 과세연도부터 2029 과세연도까지 본 정부령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d.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1인 주주 회사를 제외) 및 *BUMDes/BUMDes Bersama* 형태의 법인 납세자로서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시점까지 기존 정부령 GR-55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 상기 적용 제외 납세자 항목 중 a) 및 b)에 해당하면서 정부령 GR-55에 따라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는, 2026 과세연도 말까지 본 정부령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납세자가 계속하여 정부령 GR-55상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최종세 납부 확인서 관련 규정

- a.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2024 과세연도에 종료된 개인 납세자의 경우, 해당 확인서는 2025 및 2026 과세연도에도 유효합니다.
- b. 정부령 GR-55에 따른 적용 가능 기간이 2025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개인 납세자 및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해당 확인서는 2026 과세연도에도 유효합니다.
- c. 본 정부령 시행 이전에 등록된 협동조합으로서 적용 가능 기간이 2024 과세연도부터 2029 과세연도 사이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 확인서는 납세자가 더 이상 정부령 GR-55상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기 a) 및 b)에 해당하는 확인서는 해당 납세자가 본 정부령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제도의 적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c@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pwc.com	Raka Putra raka.putra@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pwc.com	Hendra Lie hendra.lie@pwc.com	Riyadi riyadi.riyadi-c@pwc.com
Adrian Hanif adrian.hanif@pwc.com	Hisni Jesica hisni.j.jesica@pwc.com	Runi Tusita runi.tusita@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pwc.com
Aman Santosa aman.santosa-c@pwc.com	Irene Satyanagara irene.satyanagara@pwc.com	Sukma Alam sukma.alam-c@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pwc.com	Surendro Supriyadi surendro.supriyadi-c@pwc.com
Angeline angeline.angeline@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pwc.com	Susetiyo Putranto susetiyo.putranto@pwc.com
Angga Wardhani angga.w.wardhani@pwc.com	Made Natawidnyana made.natawidnyana@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c@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pwc.com	Marlina Kamal marlina.kamal@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pwc.com
Avinash Rao a.rao@pwc.com	Nicholas Sugito nicholas.sugito@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pwc.com	Nikolas Handradjid nikolas.handradjid@pwc.com	William Christopher william.christopher@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pwc.com	Novie Mulyono novie.mulyono@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pwc.com
Esa Perdana esa.perdana@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



@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26 PwC Tax Indonesi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